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47 발의연월일: 2020. 11. 10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• 이용빈 • 민병덕

진성준 • 서영석 •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으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27조제2항, 제29조제2항, 제37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제2항 중 "貸借對照表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 제29조제2항 중 "貸借對照表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 제37조제3항 중 "貸借對照表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7條(資本金등) ① (생 략)	第27條(資本金등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會計法人은 직전 事業年度	②
末 貸借對照表의 資産總額에서	<u>재무상태표</u>
負債總額을 差減한 금액이 大	
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	
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	
每 事業年度 종료후 6月이내에	
社員의 贈與로 이를 補塡하거	
나 增資하여야 한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第29條(他法人出資의 제한등) ①	第29條(他法人出資의 제한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第1項의 自己資本은 직전	2
事業年度末 貸借對照表의 資産	<u>재무상태표</u>
總額에서 負債總額(損害賠償準	
備金을 제외한다)을 差減한 금	
액을 말한다.	<u>.</u>
第37條(解散) ①・②(생 략)	第37條(解散) ①・② (현행과 같
	승)
③ 會計法人은 第1項의 사유에	3
의하여 解散하는 경우 第28條	
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한	

損害賠償準備金等	의 금액(解散직
전 事業年度末	<u>貸借對照表</u> 상의
금액을 말한다)	에 해당하는 금
액을 韓國公認會	會計士會에 별도
로 預置하여야 형	한다.

④ (생 략)

<u>재무상태표</u>
<u>.</u>
④ (현행과 같음)